

총액인건비제의 평가와 대안

조성호 / 정책분석팀장

2006. NO.2

I. 문제의 제기

II. 총액인건비제의 의의

III. 총액인건비제의 평가

IV. 총액인건비제의 대안 제시

I 문제의 제기

-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지방분권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를 설정하고, 2004년 총액인건비제 도입계획을 수립함
- 또한 참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2005~2006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는 전면적 시행을 추진할 방침임

《총액인건비제의 추진경과》

- ① '03. 7월 지방분권로드맵 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 설정
- ② '03. 9 - 1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 제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③ '04. 4 - 12월 총액인건비제 도입계획 수립
- ④ '05. 2 - '05. 12월 시범사업 근거마련 및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⑤ '06. 1 - '06. 12월 대전광역시 등 19개 지역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⑥ '07. 1월 이후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 실시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 이러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공무원 노조·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의 현주소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총액인건비제의 개념과 특징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세출예산 항목》

구 분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물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 행자부 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운영하게 함
- ① 본청기구·한시기구 설치기준, 합의제기관·자문기관·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설치 승인권 및 각종 정원책정권 등 15개 권한을 이양
 - ② 부단체장의 정수·직급기준, 본청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직급기준, 설치요건 등 최소한의 기준만 존치

- ③ 총액인건비제 실시시, 자치단체의 상위직 증원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으로서 자치단체별 표준기구(안)을 제정, 보급
-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운영 적정성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견제·감시를 통해 통제하도록 함
- 또한 조직운영의 비교평가 및 결과의 공시, 조직비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과 미흡한 지자체에 중앙의 정밀 조직진단 실시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구분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산정방식	- 유형별 표준정원 산정	- 인건비 범위설정 및 총액 인건비 산정
정원책정 및 기준초과	- 표준(보정)정원 기준내 정원 자율 책정 - 상위직급/보정정원 초과정원 책정은 행자부장관 승인	- 행자부장관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 지방의회 승인
기구설치	- 기구정원규정에 규정된 기준 이내에서 설치 - 4급 이상 기구설치는 행자부장관 승인	- 부단체장·보조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최소한의 기준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지방의회/주민통제	- 절차적 미비 및 정보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기능 미약	- 조직운영 상황의 공시제·입법예고제 강화 및 재정역량 분석 실시
조직진단	- 조직진단제도의 형식화	- 조직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 의무화 - 중앙정부의 정밀 조직진단 실시

자료 : 김병국, “지방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2006)

2.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당위성

□ 전통적 행정비용 통제방법인 총정원제는 기관별 정원과 직급결정을 중앙통제 수단에 의해 수행

□ 이러한 각 기관의 정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중앙통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중앙정부의 정원 통제부서 및 예산부서들이 전체 정부예산의 10% 밖에 안되는 운영경비(인건비포함)의 세부사항을 관리하는데, 95%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

□ 1980년대 이후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신공공관리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영국·미국 등 OECD 국가들은 각 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건비 상한선을 설정·운영하는 예산총액 통제방식으로 전환
→ 총액인건비제(Total Payroll Budgeting) 도입

① 인건비와 기타 행정경비를 하나의 운영경비 지출항목으로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운영권한을 각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중앙통제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됨

② 운영예산제에서는 전년도의 불용액 이월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정원수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

③ 그러나 중앙 인사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인건비 지출의 총액한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 각 기관의 임금협상에 직접 개입(뉴질랜드),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통보(영국), 공통 적용되는 보수와 직급의 구조에 대해 관여(호주)

□ 이와 같은 총액인건비제는 운영경비 총액에 대한 재정적 통제수단을 통해 각 기관의 융통성을 높여주어 지식기반 사회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에 기여

- ①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비용'개념이 정착됨에 따라, 인력구조 형성 및 관리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지방경영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② 영국의 경우, 총정원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경비지출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2% 더 높았으나,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후에는 경비지출이 감소하는 추세
- ③ 프랑스는 1980년대 최소한의 통제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인력규모의 급속한 팽창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컸으나, 실시 이전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지방공무원 증가율이 낮아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에서 2005년부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자치 조직·인사권한의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총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 전환을 추진

- 표준정원제 자체는 OECD 국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추세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동 제도의 주요골자인 표준정원산식도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임
- 표준정원제의 행정수요 분석을 위해 사용 중인 변수

① 4개 기본변수 : 인구, 면적, 기관수, 결산액

- ② 8개 지역특성변수 : 낙후지역면적, 해안선길이, 관광객수, 생활보호자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 도로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 인구수, 도시계획 대상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유인 도서수

3. 총액인건비의 산정방법

1) 2005·2006 총액인건비 산식

- 2005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의 산식을 살펴보면, 2005년 인건비는 「2004년 결산금액 + 처우개선분(1년치) + 인구보정 + 인력증감분」으로 산정하도록 함

《총액인건비 산식》

산식 A = B + C + D + E + (F)					
A	B	C	D	E	F
05년 인건비	04년 결산금액	05년 처우개선분	인구보정 (04년 증가분) 인구 : 04.6-03.6	인력증가분 (04년 증가) 인력 : 04말03말	
06년 총액인건비	05년 인건비	06년 처우개선분	인구보정 (05년 증가)	효율보정 (보정정원 대비)	정책보정

자료 : 행정자치부, 2005

- 처우개선분은 「2005년초 신규처우개선분 0.5% + 2005년 봉급조정수당 1.2%」로 1.7%를 적용함
 - 인구보정은 행정수요의 증감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4년도 6월말 - 2003년도 6월말 인구수) × 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평균인건비 × 1/3」을 적용함
 - 2004년도 인력증감분은 「인력증감 × 공무원 1인당 인건비 × 1/2」을 적용함
- 2006년 총액인건비는 「2005년 인건비 + 2006년 처우개선분 + 인구보정 + 효율보정 + 정책보정」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 효율보정은 「보정인원 ×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로 산정함
 - ※ 보정인원 = 보정정원 - 현정원
 - 정책보정은 총액인건비가 전년도 인건비에 당해년도 처우개선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정하는 것임

2) 2007 총액인건비 산식

- 2007년 총액인건비는 각 지자체 유형·행정기능별로 개발된 산식에 의거하여, 개별 지자체의 행정기능별 변수를 적용하여 행정기능별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
- 자치단체 유형, 기능별 구분
 - ① 지자체의 유형은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 제주도, 50만이상시, 50만미만시, 도농복합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로 구분

② 지자체의 기능은 11개의 중기능으로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중기능	세부 기능
기획조정기능	- 기획/예산/감사/법무/홍보공보
행·재정기능	- 일반관리/세무/회계·관재/민원/전산·통신/교육원/대학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문화재/체육/교육·청소년/관광
보건복지기능	- 보건/위생/아동보육/여성/장애인/노인복지
산업경제기능	- 농업/수산/임업/공원녹지/상공/고용노동/투자통상
환경관리기능	- 수질/대기/청소·폐기물/상하수도
도시주택기능	- 도시계획/지적·토지/주택/건축/건설
지역개발기능	- 도로/교통운수/하천·소호
소방·방재·민방위	- 소방/방재·치수/민방위
지방의회기능	- 의정일반/의사관리/전문위원
읍면동기능	- 일반행정/사회복지/산업경제/방재·치수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 「자치단체의 유형·기능별 적정 인력규모 × 평균인건비 × 보정」으로 산정함

- **기능별 적정 인력규모**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5년간의 기능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회귀모형을 구하고, 회귀모형에 2006년 기준의 기능별 행정수요 지표를 대입하여 공무원 정원을 구함
- **보정** : 바다가 있는 지역, 오지지역의 행정수요 특수성 보정, 주간 인구·특수인구 보정, 외국인 거주자 보정, 보건·복지인력 보정, 지구 특성 보정, 인구증감 반영, 상·하한 보정, 효율보정

II 총액인건비제의 평가

1. 총액인건비제의 본질 측면

1) 인건비 지출의 총액한도 설정 측면

-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정신은 자치단체의 엄격한 인건비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것임
- 여기서 인건비 상한선은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외국의 인건비 상한선 제도》

구 분	내 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성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조직체계 및 정수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함(재정규모 고려) - 자율성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조언 등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지방자치법 247조 3항)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조직구성 형태, 규모, 공무원 수 등에 대해 중앙 정부는 관여하지 않음 -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카운슬세(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임)를 올리면 가능(재정규모 고려)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에 의해서 결정함(재정규모 고려) - 2003년도 지자체 본예산에서 인건비지출은 332억 9천만 유로로 총지출의 23%, 경상지출의 36%를 나타남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기능별 행정수요 분석을 통해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 표준정원제(총정원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① 11개 기능별로 행정수요를 산정하여 공무원 정원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 표준정원제의 12개 변수를 약 50여개의 변수(서울시 48개, 경기도 41개)로 확대한 것에 불과함

② 행자부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규모가 그간의 행정수요에 상당부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보정 실시”한다고 밝힘 → 표준정원제를 답습

③ ‘해안선 길이와 오지지역 면적’ 등 행정수요 지표로 부적합한 표준정원제의 지표가 사용되었으며, 과거 5년치의 행정수요 지표만을 사용함에 따라 미래의 인구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2007 총액인건비제의 용어(산식측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표준정원제(총정원제)라고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2)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운용의 자율성 측면

□ 현행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 기준,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에 대한 제한 및 행자부의 표준기구(안) 제시 등의 통제가 여전함

- 행자부에서는 시범기관들이 대체로 하위직을 감축하는 대신 상위직을 증원하는 쪽으로 조직개편 추진했다고 하여, 상위직 증설 제한 등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제한은 자치단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일선행정 기관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따라, 상위직 증원에 대한 제한권한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됨

《외국의 상위직 통제관련 제도》

구 분	내 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직무의 급을 분류하고 표준적인 직무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이를 참고로 조례를 제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특정 직위는 설치의무가 부과됨 ※ 교육담당관(Chief Education Officer), 소방담당관(Chief Fire Officer), 사회복지국장(Director of Social Services), 경찰국장(Chief Constable), 감사관(Inspector of Weights and Measures) 등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의 상위직에 국한하여 중앙의 통제가 있음 - 중간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데парта망(Department)과 레지옹(Region)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나아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조직·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방공무원 계급구조 및 보수체제에 대한 개편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

3)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통제로 전환 측면

- 총액인건비제의 또 다른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 및 기구설치에 대한 통제방식을 **행자부(수직적)에서 지방의회(수평적) 통제로 전환**하는데 있음
- 지방의회의 통제효율화를 위해 조직운영 상황의 공시제·입법예고제 강화, 재정역량의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처럼 행자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지방에 권고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통제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정규모대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의회에 통제를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중앙의 권력적 방법에 의해 상위직 증설현상이 통제되기 보다는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 중앙의 비권력적 진단·평가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 함

2. 2005·2006 시범사업과 2007 총액인건비제의 비교 측면

- **2005·2006 총액인건비제는 인구보정, 효율보정 등에 의거 총액인건비제가 산정**됨
 - 인구보정 : 인구증감분 × 주민 1인당 인건비
 - 효율보정 : 보정인원 ×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인건비

- 반면에, 2007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기능별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음
- 인력기획 이론에서 공무원 정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인구라고 가정할 때, 2007 총액인건비제는 인구변수가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
 - 2007 총액인건비제 기능별 변수중 인구변수 수 : 서울은 전체 48개중 7개, 경기도는 6개에 불과
 - 2007 총액인건비제 보정 변수중 인구변수 수 : 전체 9개중 1개에 불과
- 반면에 2005·2006 총액인건비제가 인구변수를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유일한 변수로 상정하고 있어, 2007 총액인건비제 보다 인력기획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력기획 이론에 의하면, 인구수가 공무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3.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측면

- 표준정원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정원이 많거나 산하기관수가 많은 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을 갖도록 산정됨(김병국, 2004)
- 그 결과, 경기도의 경우 매년 인구가 20 - 30만명씩 증가하여도, 표준정원제 하의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임

《전국 시·도별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

(2005. 12. 31 기준)

시도	인구수	전체(A+B)		일반직(A) (소방직 제외)		소방직(B)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총계	48,784,818	73,663	662	44,749	1,090	28,914	1,687
경기	10,697,215	7,846	1,363	2,868	3,730	4,978	2,149
서울	10,169,642	16,160	629	11,088	917	5,072	2,005
부산	3,638,293	6,283	579	4,154	876	2,129	1,709
대구	2,511,552	4,708	533	3,241	775	1,467	1,712
인천	2,600,495	5,331	488	3,921	663	1,410	1,844
광주	1,401,745	2,787	503	1,999	701	788	1,779
대전	1,454,638	2,885	504	2,061	706	824	1,765
울산	1,087,648	2,291	475	1,656	657	635	1,713
강원	1,513,110	3,401	445	1,810	836	1,591	951
충북	1,488,803	2,604	572	1,556	957	1,048	1,421
충남	1,962,646	3,205	612	1,796	1,093	1,409	1,393
전북	1,885,335	3,147	599	1,726	1,092	1,421	1,327
전남	1,967,205	3,380	582	1,796	1,095	1,584	1,242
경북	2,688,491	4,060	662	2,010	1,338	2,050	1,311
경남	3,160,431	3,855	820	1,941	1,628	1,914	1,651
제주	557,569	1,720	324	1,126	495	594	939

자료 : 경기도, 2006

-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직보다 소방직 공무원수가 많은 기형적 인력구조가 형성됨
- 그 만큼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전국 시도별 일반직 및 소방직공무원수 비교》

(2005. 12. 31 기준)

시도별	계	일반직	소방직
합계	73,663	44,749(61%)	28,914(39%)
경기	7,846	2,868(37%)	4,978(63%)
서울	16,160	11,088(69%)	5,072(31%)
부산	6,283	4,154(66%)	2,129(34%)
대구	4,708	3,241(69%)	1,467(31%)
인천	5,331	3,921(74%)	1,410(26%)
광주	2,787	1,999(72%)	788(28%)
대전	2,885	2,061(71%)	824(29%)
울산	2,291	1,656(72%)	635(28%)
강원	3,401	1,810(53%)	1,591(47%)
충북	2,604	1,556(60%)	1,048(40%)
충남	3,205	1,796(56%)	1,409(44%)
전북	3,147	1,726(55%)	1,421(45%)
전남	3,380	1,796(53%)	1,584(47%)
경북	4,060	2,010(50%)	2,050(50%)
경남	3,855	1,941(50%)	1,914(50%)
제주	1,720	1,126(65%)	594(35%)

자료 : 경기도, 2006

□ 2007년 총액인건비제 예비산정 결과의 경우에도, 표준 정원제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불이익과 박탈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07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 인건비 증가율

→ 서울 1.4%, 울산 2.8%, 광주 2.8%, 대전 2.3%, 부산 2.1%, 대구 1.0%, 인천 0.9%, 경기 2.8%, 전남 1.1%, 충북 0.8%, 경북 △ 0.2%, 경남 △0.4%, 전북 △0.7%, 강원 △0.7%, 충남 △0.7%

1. 제1안 : OECD 국가형(중장기안)

-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산식은 표준정원제 성격이 강하여 기존 표준정원제 하의 공무원 정원을 정당화 하는 경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본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는 OECD 국가처럼 전체 재정규모와 연계되어야 타당하므로, 총액인건비제의 가이드 라인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수준으로 전환하여야 함
 - 행자부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시에, 선진국의 예산총액 통제방식처럼 예산총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자치단체에 주도록 함 → 재정규모를 고려해야 경영개념이 도입 됨
 - 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시, 군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예산총규모 대비 총액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자치단체에 제시
-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단기간에 공무원 수를 구조조정할 수 없으므로 약 10년간의 기간을 주어 구조조정을 하도록 함
 -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방안을 제시하면, 현행 시·도의 예산 총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의 평균인 약 7%대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
 - 7%대가 넘는 자치단체는 향후 10년 동안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함

《전국 시·도별 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인 건 비				예 산 총 규 모	
	'04년도(A)	%(A/C)	'05년도(B)	%(B/D)	'04년도(C)	'05년도(D)
경기	3,280	3.5%	3,690	4.3%	93,528	85,691
서울	8,140	5.7%	8,690	6.0%	141,800	145,658
부산	3,190	7.2%	3,350	7.0%	44,411	47,585
대구	2,370	7.9%	2,510	7.6%	30,146	32,874
인천	2,540	7.5%	2,690	6.8%	34,006	39,349
광주	1,490	7.8%	1,580	7.8%	18,990	20,306
대전	1,560	8.9%	1,620	8.5%	17,445	19,119
울산	1,100	8.4%	1,220	8.7%	13,172	14,004
강원	1,600	9.0%	1,700	7.7%	17,736	22,072
충북	1,250	7.5%	1,320	7.6%	16,597	17,325
충남	1,530	6.5%	1,580	6.3%	23,502	25,237
전북	1,530	7.2%	1,680	7.0%	21,294	23,964
전남	1,680	5.5%	1,830	5.6%	30,752	3,284
경북	1,840	6.7%	2,030	6.8%	27,449	29,913
경남	1,820	5.8%	2,040	5.9%	31,526	34,751
제주	850	8.8%	990	9.8%	9,611	10,096

자료 : 경기도, 2006

2. 제2안 : 2007 총액인건비제 수정형(단기안)

-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경기도는 그간의 불합리한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음
- 그러나 금년 9월말에 통보된 행자부의 2007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2.8%에 불과함
-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나,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2달 남짓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산식의 변경보다는 보정산식의 변경에 총력을 기울려야 함

- 총액인건비제 산식 : 기능별 적정 인력규모 × 지방자치단체 유형·기능별 평균인건비(일반산식) × 보정(보정산식)
 -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요상으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수요 지표를 개발하여 행자부에 건의하여 보정 지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우선, 행자부가 인구수를 지자체 행정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행자부, 2006), 보정변수로서의 인구변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 2007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변화를 반영(보정시 1/3 적용)
 - 행자부 주장대로 인구변수가 중요한 만큼, 1/3을 적용하지 않고 100% 적용시 경기도는 133명의 정원확대 효과가 있음
 - 둘째, 경기도 관내에는 신도시 개발이 많으므로 신도시 개발 면적을 대표적인 보정변수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신도시 개발면적('06년말) : 수도권 530만평, 지방 243만평
 - 셋째, 경기도 관할 시·군 숫자, 경기도 주둔 군인수(전국 최다)를 보정변수로 반영토록 함
 - 타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시·군이 10개 내외인데 비해, 경기도는 31개에 달함
- ⇒ 총액인건비제의 대안인 제1, 2안 공히 표준기구안, 상위직 통제(안)을 폐지하여 지방의회가 기구와 직급을 통제토록 함